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005.9.12(월)10:00

조 례 안 등 검 토 보 고 서

- ①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②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 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④ 거창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⑤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⑥ 거창군치매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⑦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

총 무 위 원 회

□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5. 8. 31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5인

다. 회부일자 : 2005. 8. 31

라. 의안번호 : 제2005 - 47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안 제출 이유

○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심의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존의 수여대상 추천권자외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4호)

○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국내외 귀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써의 인정감만 고취시킬것이 아니라 거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거창군 지역발전 기여 등 명예군민증서 수여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확대지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자는 2명뿐임

(전 거창군세무서장 조동호,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최종원)

○ 추천권 자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수여 대상자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인근 함양군과 무주군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61명에게 무주군은 12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각각 수여하였으며, 함양군의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들이 매년 자원봉사 활동(무료진료, 무료영정촬영 등)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함.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조례개정안에 대한 군수의견

- 대상자의 확대는 검토중이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5.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6. 참고자료

- 거창군명예군민 심사위원회 현황
 - 개최실적 : 2회(2005.1.13, 2005.2.17)
 - 위원회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부군수	이준화	
위 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임명직
"	행정과장	윤생이	"
"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	군의회 부의장	신현기	위촉직
"	거창전문대교수	조기여	"
"	거창기능대교학처장	임홍섭	"
"	YMCA사무총장	박종관	"
"	세세대육영회 회장	이영자	"

②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0
- 나. 제출자 : 정종기 의원 외 9인
- 다. 회부일자 : 2005. 8. 30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8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거창군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창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신청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부군수)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그러나 대통령령 제14981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2004년도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였으나 2005년부터 가계지원비(2,350백만원)와 일시사역인부임(1,944백만원)이 인건비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인건비는 29,250백만원이나 자체수입은 28,307백만원으로 3.2%인 943백만원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을 자체수입의 3%로 규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상황과 거창군 자체세입규모, 기존의 지원예산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회신되었음.

[기획감사실]

·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를 자체수입의 3%로 한 것은 최근 3년 평균지원액이 5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하므로 삭제가 필요

[행정 과]

· 실업계고교의 인문계 전환에 대비 제2조(보조사업범위)중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을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거창군이 국제화 교육특구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창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원어민 교육강사 인건비, 항공료 등 지방비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법적장치로서 명문화가 필요함)

[전략추진사업단]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을 3%로 제한한 것은 향후 국제화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대지원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①보조기준액을 삭제하지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이유로, 행정과 및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보조한도액 3%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제시한 것임.

안제2조의 보조기준액을 설정한 것이 동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 제2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음.

즉 관련법에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범위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②보조사업 범위에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 하

자는 것은 현재까지 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며, 특구지정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예산편성보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지원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제정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1.1.28>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4. 참고자료

□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26(2)	17	7(2)	7	

주 : ()는 분교이며, 전체수에는 미포함

□ 연도별 자체수입 및 인건비 계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최종)	2004(최종)	2005	
			당초예산	제1회추경
자체수입(a)	26,028	30,306	19,227	28,307
인건비(b)	17,180	20,137	29,116	29,250
비율(b/a)	151.5%	151.0	66.0	96.8

□ 거창군내 초중고등학교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비고
계	3/80,000	4/70,000	
초등학교	-	1/25,000	
중학교	1/30,000	2/35,000	
고등학교	2/50,000	1/10,000	

□ 타자치단체 기준액 규정 현황

- 지방세의 5% : 마포구, 안산시, 지방세의 4% : 안양시
- 지방세의 3% : 서산시, 서울(강서, 종로, 성북구), 김해시
- 지방세의 2% : 청주시
- 자체수입의 3% : 서울 양천구, 인천(연수구, 남동구)
- 자체수입의 2% : 시흥시, 자체수입의 1% : 인천 부평구,

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8. 3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2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5.7.1 조직개편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됨으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배제되어 있어 포함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2005.7.1 거창군 조직개편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내용대로 할 경우 농정분야가 제외되는 것으로 거창군정의 많은 부분이 농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 지방자치법 제15조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④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8. 3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4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인터넷 및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별표1]의 구분·기준·요액 및 비고란 중 6.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신청 방법이 종전의 수기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자부 및 도의 권고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입찰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 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임.

○ 현재까지 도내 20개시군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창원, 마산, 양산, 진주, 진해, 김해시 등 6개시가 폐지하였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만이 폐지하였음.

○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거창군의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이 2004년의 경우 550백만원으로 군전체 수수료 수입중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별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연도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

회계연도	수수료수입 총액	입찰참가 수수료	점유비율
2004	19억 2천만원	5억 5천만원	29%
2003	13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	18%
2002	12억 8천만원	1억 7천만원	14%

○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로써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한 자치단체가 없으나, 동 수수료징수요율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인하조정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사항에 대하여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거창군보다 재정여건이 유리한 대다수 시군에서도 폐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안을 심의보류 또는 부결할 경우 오히려 지역내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제정근거

- 地方自治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
- 경상남도 세정과-5556(2004.7.19)

6. 참고자료

- 감사원 통보요지(→행정자치부장관)
 - 전자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행 입찰 건당 5,000원부터 30,000원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
- 경상남도 권고사항(→전시장·군수)
 -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또는 대폭인하토록 권고함.
- 공사 일반경쟁 입찰공고 대상

구분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기타(소방전기등)	비고
금액	1억원초과	7천만원초과	5천만원 초과	부가세별도

5]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8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2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거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군이 출연한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
- 군수는 필요시 운영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등이 발생할 경우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 거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

○ 장학기금은 향후 10년간(2014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조성재원은 군비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안 제4조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이자로 장학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장학재단의 명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보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장학재단의 명칭을 「(재)거창군 장학회」로 최종 결정하였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임.

당초안	수정안
제1조(목적)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이하생략	제1조(목적)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이하생략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14조(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の 支出을 할 수 없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4.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㉔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8. 30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5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치매병원을 찾는 이용자와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본문 중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으로,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 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우리 정서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치매환자는 노인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이용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제정근거

- 地方自治法 제135조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건립 현황

- 위치 : 거창읍 송정리 일원
- 규모 : 건물연면적 1,283㎡(388평), 지하1층 지상4층
- 공사기간 : 2004.12 ~ 2005.11
- 사업비 : 1,853,500천원

7] 거창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9.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9. 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1호

2. 제안이유

○ 거창군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스포츠파크사업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총액입찰 실시를 위하여 의회의 계속비사업변경 동의를 득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사업량 및 사업비 등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본부석리모델링(2층) 운동장(인조) 및 보조경기장(천연) 육상트랙(우레탄) 등	주경기장 신축 보조경기장 조성 주변공원화사업 등
사업기간	2002~ 2007	2002~2009
사업비	총사업비 9,450백만원 국2,400 도1,000 군2,750 기금 3,300	총사업비 32,500백만원 국15,550, 도4,665 군12,285
-2005	예산액 4,000백만원 국1,500 도450 군1,050 기1,000	예산액 국1,500 도1,000 군2,0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2002.10.29 의결한 사항임.

당초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과정에서 주경기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 의회의 보고와 중앙투융자사업 승인을 득한 사항임.

○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공사시공을 위하여는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50백만원으로 총액입찰이 불가하여 총공사비 32,500백만이 소요될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임.

○ 계속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사전 보조내시 또는 협약서 등 예산보조를 위한 별도의 동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은 외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임.

내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매년 22억원 정도의 군비부담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차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당초대비 국비는 13,150백만원, 도비는 3,66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비는 2,400백만원, 도비는 1,000백만원 각각 보조된

것으로 미확보된 금액은 국비 10,750백만원 도비 2,665백만원임.

※국고보조의 경우 운동장체육관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비에 대하여는 명확한 보조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임

○ 금년도 증액되는 사업비 1,550백만원은 도비보조금 550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2005. 8.18 통보)

4.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第33條 (繼續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工事나 製造 기타의 事業으로서 그 完成에 數年度를 요하는 것은 所要經費의 總額과 年度別 금액에 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繼續費로서 數年度에 걸쳐 支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繼續費로 支出할 수 있는 年限은 당해 會計年度로부터 5年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시 그 年限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1994.12.22>